부안군 공고 제 2022-1644호

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

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)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9일

부 안 군 수

1. 제 목 :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2. 11. 9. ~ 11. 23. (15일간)
3. 과태료 부과처분내역

변산반도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자		위 반 장 소	위반 일자	위반내용	과태료	관련법규	의견제출 기 한
성 명	주 소						
이*석	전북 군산시 칠성로 ***	작은당 해변	'22.9.25	출입금지	100,000원	자연공원법 제27조	'22.11.23
장*흠	전북 군산시 나운로 **	수성당	'22.10.1	출입금지	100,000원	자연공원법 제27조	'22.11.23
임*희	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도산길 **	성천항	'22.10.8	취사행위	100,000원	자연공원법 제27조	'22.11.23

4. 의견제출처 : 부안군청 환경과 (063-580-4437)
5. 기타
   가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(부과예정 과태료의 20/100범위 이내)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   나. 과태료 처분과 연계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(전자문서)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